

# 국산 삼계탕, 올 여름부터 미국 식탁에 올라간다

- 미 농업부, 현지 시간 3월 26일 관련 법 개정 공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미국 농업부(USDA)가 지난 3월 26일(미국 현지 시간)자로 우리나라를 삼계탕 등 가공육가공품 수입허용 국가로 인정하여 국내산 삼계탕의 미국 수출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04년부터 추진해 온 국내산 삼계탕의 대미(對美) 수출은 축산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그 동안 수차례 양국 검역당국 간 협의가 있었지만 국내 가공육 관련 위생수준에 대한 미국의 동등성평가(수출국의 축산물 위생관리제도가 미국의 제도와 동등한지 여부를 서류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평가하여 인정하는 절차)절차와 미국내 입법과정을 통과하는 문제로 인해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2차례에 걸친 미국 측의 현지조사 대응, 요구자료 제공 및 관련업계의 위생수준 개선노력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가공육 위생관리제도가 미국과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한 바 있다. 미국 농업부는 그간 우리나라의 축산물 위생관리 시스템과 수출 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

결과 등을 검토한 후 '12년 11월에 우리나라를 수입허용 국가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부 법률 검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미 농업부(USDA)가 지난 3월 26일(미국 현지 시간) 확정·공포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한국산 가공육가공품의 대미 수출을 허용한다는 것이며, 오는 5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미국 정부와 삼계탕 수출

표 1. 가공제품 수출현황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통계)

품목	국가명	2011		2012		2013	
		수량 (톤)	외화액 (천불)	수량 (톤)	외화액 (천불)	수량 (톤)	외화액 (천불)
닭고기	베트남	10,423	16,282	14,991	18,670	19,807	23,440
	홍콩	86	139	1,642	2,639	4,111	6,437
	기타	0.1	0.1	0.1	0.4	0.03	0.3
	소계	10,510	16,420	16,634	21,310	23,918	29,877
가금부산물	홍콩	-	-	406	552	5,898	3,796
	베트남	597	873	479	731	559	519
	태국	-	-	-	-	996	856
	소계	597	873	885	1,283	7,453	5,170
식용란	홍콩	100	15	9	263	35	1,068
	싱가포르	114	24	0.2	12	-	-
	기타	-	-	-	-	0.5	79
	소계	214	40	10	275	36	1,147
삼계탕	일본	2,288	11,964	1,985	10,098	1,179	6,564
	대만	711	2,313	428	1,895	496	1,743
	홍콩	32	155	55	253	168	779
	기타	45	212	50	233	51	287
	소계	3,077	14,644	2,517	12,479	1,894	9,373
총계		14,398	31,977	20,046	35,346	33,301	45,567

\*기타(삼계탕) : 싱가포르, 호주,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

## 최종법률(Eligibi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Export Poultry Products to the United States) 주요 내용

- ☞ 미 연방 가금제품 검사규정을 개정, 한국을 가금제품 수출허용 국가목록에 추가
- ☞ 한국의 법, 제도, 검사체계 및 그 이행상황에 대한 검토결과, 미국의 가금제품검사법 등 관련 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평가
- ☞ 승인된 한국 수출작업장에서 도축·생산 또는 가공된 가금제품은 미국으로 수출이 가능

### 〈주요 내용〉

#### ■ 미 농업부, 국내산 삼계탕 등 가금육가공품 수입 허용

- 3월 26일(미국 현지시간) 우리나라를 가금제품(삼계탕 등) 수입 허용국가 목록에 추가하는 법률 확정·공포
- 최종 법률은 미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실리고 공포일로부터 60일 이후인 5월 25일부터 시행
- \* 법률 주요 내용 : 한국정부가 인증한 수출작업장에서 가금육 가공품 수출 가능, 한국산 신선 가금육은 가축질병 문제로 수입제한, 최초 3년간 매년 현지점검 실시 등

#### ■ 이번 법 개정은 민·관 협업 체계인 ‘수출개척협의회’의 성과

- '14년 1월 발족한 『민·관 합동 수출개척 협의회』에서 수출 장애요인으로 논의된 이후 다양한 루트 통해 수입 허용 촉구

작업장 등록 및 수출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올 상반기 중 미국으로 삼계탕 수출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삼계탕은 열처리된 제품으로 국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무관하게 수출이 가능하며 신선 가금육은 국내에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질병 발생이 없어야 수출 추진이 가능하다. 이번 법 개정은 농식품부·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축산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수출개척협의회’가 올해 1월부터 운영되면서, 대미 삼계탕 수출을 위한 민·관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발휘한 성과로 볼 수 있다. 그간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공조하여 주한미국대사관 등 다양한 외교경로와 국제회의 시 미국 정부에 대해 조속한 수출허용을 강력히 촉구하여 왔다. 농식품부는 향후 식약처 등과 협업을 통해 대미 수출업체의 검역·위생조건 준수 등 준비사항 지도 감독 등 수출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대미 삼계탕 수출 재개를 준비 중인 현지 대형 유통매장(미 동·서부 유통 매장(KEY-FOOD·C-TOWN마켓, 99랜치 마켓) 연계 판촉)과 연계한 삼계탕 런칭 행사, 판촉행사 등 마케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對 몽골 돼지고기 수출('14.3.20)과 對 베트남 가금육 수출('14.3.24) 재개 등 연이은 축산물 수출시장 개척에 따라 그간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로 어려움을 겪은 농가 및 업계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관 합동으로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양계**